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의3 제4항, 제9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평가 수행·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
(안 제4조의2, 제4조의3)

나. 법 제9조의2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계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평가 및 반영결과와 조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안 제2조의3)

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 사업,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에 문화영향평가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예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2.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출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예산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 또는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선정 기준, 평가방법, 평가유형,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년도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연구 업무 수행 경력
2.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 업무수행체계 보유 현황 및 운영계획

②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3.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3(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부 정책 관련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처분기준(제4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3 제3항 제3호	경고	지정취소

[별표 2]

전담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 지정 [] 지정 갱신 신청서

(앞쪽)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 지정
[] 지정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 수행 경력(최근 5년 이내) 3. 문화영향평가 사업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보유 현황이 포함된 조직 운영 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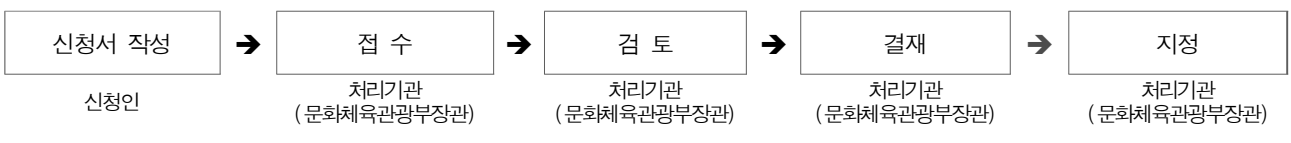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지정 [] 지정 갱신 신청서

(앞쪽)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 지정
[] 지정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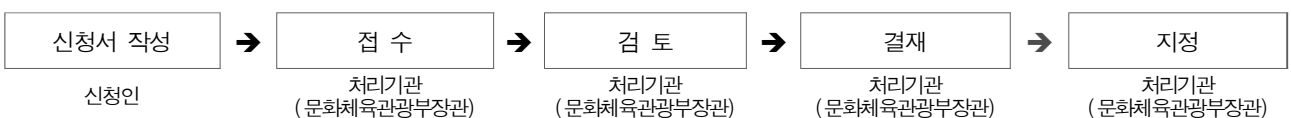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부 정책 평가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경력(최근 5년 이내) 3. 문화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서 4.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등 조직 운영 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위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문화기본법」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2.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출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예산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 또는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하게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때에는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문화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 유형,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년도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신 설>

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의2(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연구 업무 수행 경력

2.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 업무 수행체계 보유 현황 및 운영 계획

②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3.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
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
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평
가 수행기관 지정취소의 세부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9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 수행
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신 설>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4조의3(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기관을 법 제9조의4제1
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
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부 정책 관련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
력을 갖추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14